

진명해안실버타운 기관운영 안내

(입소보호사업)

1. 운영규정의 개요

가. 입소·이용정원에 관한 사항

● 입 소 보 호 28 명

나.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서비스를 이용한 날로부터 노인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 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노인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이 새로이 기산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한다.
- 장기요양서비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내에서 체결되며, 월 단위로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은 이용자와 시설과의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여 이용자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시설과 이용자 간 상호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도록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시설에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료의 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고시하는 수가 산정지침에 따라 법정 본인일부부담금을 그대로 반영하며 매년 상승률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하여 입소보호 입소자는 요양보험수가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하여 감경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단,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매월 이를 전액 부담한다.
- 그 밖의 비급여 항목(식재료 및 간식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비용(외래진료비, 약제비, 기호식품 구입 등)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한다.
- 매년 확정되는 서비스별 상세 이용료는 별지로 첨부한다.

<본인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 안내표>

구 분 (입소보호사업)		법정 본인일부부담금			
		일 반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회귀난치성, 만성질환자) -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급여수가 공단·개인 본인부담비율		공단 : 80% 개인 : 20%	공단 : 88% 개인 : 12%	공단 : 92% 개인 : 8%	면제(의료급여)
촉탁의 진찰비 본인부담비율		공단 : 80% 개인 : 20%	공단 : 88% 개인 : 12%	공단 : 92% 개인 : 8%	면제(의료급여)
비 급 여	식재료비	1식 = 2,500원			면제(생계급여)
	간식비(1일1회)	1일 = 700원			
	이미용비	입소어르신 모두 무료			
	상급침실비				

● 시설의 권리와 의무

시설은 다음 각 사항에 대하여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서비스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
- 2) 계약변경 또는 해지시 통지
- 3) 사고 또는 손해예방
- 4)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물품에 대한 분실, 파손 등으로부터의 예방
- 5)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보호
- 6) 이용자로 하여금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

●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 인수인은 보호자(또는 보증인)로서 이용자의 권익과 안전, 건강 등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의논 및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3)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4) 이용자가 생활하는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이용자의 생활환경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6) 이용자에게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 인수인의 알 권리

신원 인수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 1) 이용자의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의 의무
- 4)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시설에 통보할 의무
- 5) 계약변경 또는 해지시 통보할 의무
- 6) 불가항력적인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한 용인
- 7) 이용자 사망시 즉시 신병을 인수할 책임
- 8) 기타 시설 생활 규칙이행

● 계약의 해제

계약해지의 사유는 다음의 내용과 같으며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초 15일 전에 하여야 한다.
-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 4) 본 시설 또는 이용자가 계약서 상의 규정을 위반한 때
- 5) 본 시설 또는 신원인수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 6)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시설에게 손해를 가한 때
- 7) 본 시설의 질서를 문란케하고, 부당하게 특별대우를 요구하였을 때
- 8) 이용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9) 아무런 이용없이 장기간 이용하지 않을 때

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 이용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병원 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 병원 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인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 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병원 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 가벼운 질병(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 방문 또는 이용자의 정기·수시 병원 진료시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으며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사설 앰블런스 등)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조치할 수 있다.

라.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자는 공용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서 선량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 이용자는 공용시설을 개인용도로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용자는 공용시설 이용 시 공동생활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이용자는 제 3자에게 공용시설 등의 이용권을 임대, 양도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교환할 수 없다.
- 이용자는 공용시설 혹은 부지 내에 있어서 포유류, 관상용 새 및 어류, 파충류 등의 동물을 사육할 수 없다.
- 이용자의 보호자 및 제 3자는 공용시설 내에서 숙박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용자의 개인 기호와 관련된 물품 및 사용 시에는 사전에 시설과 협의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제한한다.

2. 종사자 근무체계

가. 직종별 종사자 인력

서비스 형태	원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보조원	조리원	계약의사	사무원	합계
입소보호	1	2	1	14	-	2	1	-	21

나. 직종별 종사자 주/야간, 휴일 배치

서비스형태		원장	사회 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 보호사	보조원	조리원	계약의사	사무원
입소 보호	주간종사자	○	○	○	○	-	○	○	-
	야간종사자	-	-	-	○	-	-	-	-
	휴일종사자	당직제				-	○	-	-
조리원(입소/주간)		06:00~18:00 / 06:00~15:00 / 09:00~18:00							

3. 장기요양급여 종류

가. 시설급여(입소보호 서비스)

☞ 자세한 급여별 상담은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053-981-0783)

4.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가. 비급여 항목

	비급여항목		
	식비	간식비	이·미용비
	1식	1식	
입소보호	2,500	700	무료

※ 상기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은 물가변동 및 기관의 사정상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가. 시설의 규모 및 설비

- 1) 대지 : 364m²
- 2) 건물 : 연면적 991.53m²
208.24m²(1층) / 216.48m²(2층) / 188.55m²(3층) / 188.55m²(4층) /
2, 3, 4층 입소보호 병설운영

3) 시설설비

구분	시설내용
1층	원장실 및 상담실, 사무실, 식당 및 조리실, 주간보호실, 화장실
2층	침실(1인실, 2인실, 3인실), 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화장실, 다용도실, 요양보호사실, 창고
3층	침실(1인실, 2인실, 3인실), 프로그램실, 목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요양보호사실, 창고
4층	침실(1인실, 2인실, 3인실), 프로그램실, 간호사실, 화장실, 다용도실, 요양보호사실

나.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 1) 전문직업 배상책임(대인/대물)
- 2) 시설소유관리 배상책임(대인/대물)
- 3) 음식물 배상책임(대인)
- 4) 가스사고 배상책임(대인/대물)
- 5) 일반화재보험

6. 기관의 특성 및 우수사례

가. 기관의 특성

- ☞ 지난 10년내 장기요양시설 평가(건강보험공단 주관) **연속 3회 최우수등급 쾌거**
- ☞ 입소보호/주·야간보호/방문요양의 복합전문 복지사업 설치시설로 어르신 욕구맞춤 **원스탑 복지서비스** 지원가능

나. 기관 우수사례



모든 것다, 노년복지를 향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수 신 : 원장
(경 유) :
제 목 : 「전국 노인복지시설(비영리) 어르신 이동편의를 위한 특장차량 지원사업」 최종선정 안내

1. 우리 회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2022-176호(2022.05.02.)와 관련하여 「전국 노인복지시설(비영리) 어르신 이동편의를 위한 특장차량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선정기관에서는 차량 인수 후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 전국 노인복지시설(비영리) 어르신 이동편의를 위한 특장차량 지원사업
나. 협조 및 준수사항
1) 차량 수령확인증, 사진, 열상* 필수 제출
*차량 전담, 활용 관련 영상 촬영 필수. 추후 지원사업 영상 제작에 사용예정
2) 홍보내용(보호자회의, 홈페이지 게시, 언론보도 등 홍보 완료 시 중앙회 전달)
3) 차량 사용 관련 모니터링(차량운행 및 정비일지 작성, 차량연간보고서 제출 등)
*차량 운행기간에 따라 매년 연간보고서 제출 필수. 소속지역 공동모금회를 통해 제출
4) 차량 수령 후 차량학특세 차량등록세 자동차보험 가입은 자부담
다. 기타사항 : 특장차량 배분은 약 11월 예정(특장차 부품 수급 및 개조로 인한 소요시간 필요)

붙임 1 자동차 등록 준비서류 1부
2 공동모금회 차량지원사업 지침 1부. 끝.

사단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담당 감리자 기획실장 김병준 회장 권태업
협조
시행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2022-364호 (2022.09.08.) 접수 ()
우 04195 서울특별시 마포구 안의대로 14,403호(공덕동,한국사회복지관) / http://www.elder.or.kr
전화 02-712-9763 관동 02-704-9932 / kasoci@elder.or.kr 공개



최우수상

최미대자 어르신 '전국 언택트 실버 시 낭송 대회' 최우수상 수상



2022년 11월 29일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산하시설인 보은전문요양원에서
주최한
'전국 언택트 실버 시 낭송 대회'에
최미대자 어르신이 본선진출을 하여
부드러운 목소리로 요양원분들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어르신이 직접
시상식에 참여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상장, 트로피 그리고 상품을 수령받아
기관에서 직원과 동료어르신의 축하 속에서
전달하였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진명해안실버타운



2021년

진명해안실버타운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A등급)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통보서
(경기)

장기요양기관명	진명해안실버타운	장기요양기관기호	12714000011
급여종류	노인요양시설(개원법)	대표자	강선희
평가년도	2021	평가등급	평가결과 A(최우수)

구분	총점	기관운영	환자안전	수급자관리	급여제공	재공결과	가점
예산집수(배정비율)	100.00	15.00	28.00	12.00	35.00	10.00	
합수	97.01	14.50	28.00	12.00	33.41	9.10	
전제합금	78.78	10.77	25.43	8.66	25.58	8.32	

1. 노인요양시설(개원법) 제5조에 의해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를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1-11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합니다.
2.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을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021-11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등급이 조율될 수 있으며, 기관등급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 수시평가 실시기관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별도가점 제도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 의료인 임명(임명)을 받은 의료인 5명 이상 임명된 시설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재공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평가결과를 재공결과로 인정합니다.
* 재공결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평가결과를 재공결과로 인정합니다.
* 심사평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그 불복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및 재심신청을 기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입소보호 이용료 안내>

기준일 : 2025. 1. 1

입소보호서비스

(단위 : 원)

등급	항 목	이용금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20%)	40%감경 대상(12%)	60%감경 대상(8%)	기타의료급 여대상(8%)	기초생활수 급대상(면제)
1급	1일 이용료	90,450					면제
	월 이용료 (30일 기준)	2,713,500	542,700	325,620	217,080	217,080	면제
	계약의사 재진진료 2회	31,570	6,310	3,670	2,520	2,520	면제
	식사(1회 2,500원) 간식(1회 700원)	246,000	246,000	246,000	246,000	246,000	면제
	총 이용료	2,991,070	795,010	575,290	465,600	465,600	면제

등급	항 목	이용금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20%)	40%감경 대상(12%)	60%감경 대상(8%)	기타의료급 여대상(8%)	기초생활수 급대상(면제)
2급	1일 이용료	83,910					면제
	월 이용료 (30일 기준)	2,517,300	503,460	302,070	201,380	201,380	면제
	계약의사 재진진료 2회	31,570	6,310	3,670	2,520	2,520	면제
	식사(1회 2,500원) 간식(1회 700원)	246,000	246,000	246,000	246,000	246,000	면제
	총 이용료	2,794,870	755,770	551,740	449,900	449,900	면제

등급	항 목	금액	본인부담금				
			일반 대상(20%)	40%감경 대상(12%)	60%감경 대상(8%)	기타의료급 여대상(8%)	기초생활수 급대상(면제)
3급 ~ 5급	1일 이용료	79,240					면제
	월 이용료 (30일 기준)	2,377,200	442,800	265,680	177,120	177,120	면제
	계약의사 재진진료2회	31,570	6,310	3,670	2,520	2,520	면제
	식사(1회 2,500원) 간식(1회 700원)	246,000	246,000	246,000	246,000	246,000	면제
	총 이용료	2,734,010	695,110	515,350	425,640	425,640	면제